2016년도 서울시설공단 공무직 채용 안내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서울시설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2016. 7. 1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직무안내 및 응시자격

○ 우리 공단 공무직 직원 관리내규 제5조의 채용 결격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집분야별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모집구분		모집인원	응시자격	응시연령
준고령·고령자 전형	청소	남성 16명 여성 5명	· 제한 없음	50세~2017년 기준 60세 (1957년~1966년 출생자)
	경비	남성 27명	· 제한 없음	
	주차	1명	· 제한 없음	
일반 전형	전기	1명	· 별표2의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소방분야 자격을 추가 소지한 경우 우대)	18세~2017년 기준 60세 (1957년~1998년 출생자)
	기계	1명	· 별표2의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소방분야 자격을 추가 소지한 경우 우대)	
	그라운드	1명	· 별표2의 조경분야 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 2개 이상 분야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 "청소, 경비, 주차"의 경우,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써, 위 직렬 종사자는 만60세가 되는 해의 말일 정년퇴직 후 근무성적 우수자의 경우 계약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초 입사시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단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의 자녀, 장애인)는 우대합니다.

2. 원서접수 : 별도 채용 홈페이지 (http://sisul.jobagent.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16. 7. 15(금) ~ 7. 25(월), 18:00

3.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공단 공무직운영관리내규 보수규정 level1 에 따름**

○ **청소, 주차**

※ 일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근로 (입직 후 근무편성에 따라 개인별 근무일 지정)

○ **경비**

※ 근무편성 :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24시간 교대근무(격일근무) 편성되므로, 감시적 업무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에 동의하여야 임용 가능

○ **설비(전기, 기계)**

※ 주40시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3교대) 편성하므로,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없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비(그라운드)**

※ 일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근로 (입직 후 근무편성에 따라 개인별 근무일 지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접수

○ **면접전형시**

① 주민등록초본 원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②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지원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위 우대사항은 채용선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면접전형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또는 오기재 등 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예외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증빙서류 미리 확인하신 후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선발방법

○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공무직)으로 임용

○ 절차 및 일정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및 접수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조치
・접수마감 : 7.25(월) ・결과발표 : 7.28(목)		・시행 : 7.30(토) , 09:30 ・발표 : 8. 3(수)		・면접 : 8. 5(금)		・발표 : 8.11 (목) ・1차임용 : 8.16 (화) ・2차임용 : 16년말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에 기재된 가점을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 공무직(무기계약)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 최종합격하여 우리 공단에 입직한 이후에는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출이나 순환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채용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02-2290-6149, 7158)

<별표1 : 결격사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직원 관리 내규 제5조(고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별표2 : 대상자격증>

구 분	기술사 등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기 계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소 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그라운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 상기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